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4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184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43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소5611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박종현, 이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민경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서석우

변론 종결2022. 6. 24.

판결 선고2022. 7. 22.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소5611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화도매판매를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화훼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3.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17.부터 2019. 4. 2.까지 매주 제단용 A급 국화(이하 'A급 국화'라 한다) 400박스(약 6,000단)를 1박스당 72,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훼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2조(공급물품)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는 다음과 같다.

1. 품명: 수입국화(중국 E) - 제단용 A급

2. 품종: 신마

3. 수량: 매주 400박스(약 6,000단)을 원칙으로 한다.

4. 단가: 20송이 4,800원(피고가 을에게 인도 금액)

제4조(상품의 운송, 인도, 검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상품을 인도하고, 인도는 인천 냉동창고에서 하며 이에 따른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았을 때에는 인도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즉시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받은 상품의 5% (25개) 이상 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동등 수량의 물품은 다음 주에 공급한다.

제5조(상품의 품질 기준)

1. 규격: 1송이

① 개화상태: 꽃 직경이 5cm 전 후, 꽃줄기 직경 0.5cm

② 무게: 40(gram) 50 (gram)

③ 길이: 65cm 이상

④ 불량 꽃 또는 병충침입이나 기타 외부적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포장 전 4시간 ~ 6시간 동안 물에 담가야 한다.

⑥ 한 묶음(10송이) 균일하게 선별 작업 한다(머리, 꽃태).

⑦ 화형이 이쁘고 꽃 색깔이 하얗고 속이 짝 차야한다.

⑧ 기형 및 꽃잎 변색되는 경우 2일, 3일 후 꽃이 피지 않는 경우는 반품 및 교환

⑨ 중국산 국화가 얼어 검정색으로 변색되는 경우 반품 및 교환(2019년, 1월, 2월)

(단, 제품 상태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⑩ E 농장 박스속지 없음 "단" 본인이 원하면 박스속지 결제는 본인 부담

2. 수령거부

택배 및 화물차량 이송 문제 "천재지변" 분제 냉동창고 출고 후 거래서 보관문제 원고에게 반환 및 보상에 제외된다.

3. 이 계약은 E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기 때문에 만약 10.말 농장 방문시 시설이나, 기술력이 떨어져 좋은 상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쌍방의 인정 및 합의한 이후 계약금은 농장에서 받아서 줄 수 있다.

제5조(대금결제)

- ① 계약서 작성하는 이틀 안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한다.
- ②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72,000원 1박스로 한다.
- ③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대금을 중국 농장 물품 출고 전 이틀 먼저 피고에게 선불지급하고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상품대금을 연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담보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한다. 또한 원고가 상품대금을 연체로 인하여 E 농장에서 출고 못할 경우 원고가 책임진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따라 2018. 9. 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급 국화를 원고에게 납품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중국에서 3차례에 걸쳐 국화를 수입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A급 국화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A급 국화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 참여하였던 소외 F(이하 'F'라 한다)도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급 국화를 납품하였음에도 원고 및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화의 수령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16. 수입한 국화에 대하여는 F로부터 통관비만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F에게 인도하였고,

2018. 12. 27. 수입한 국화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가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받고 원고 및 F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가 2019. 1. 8. 수입한 국화에 대하여는 원고 및 F가 수령을 거절하여 2019. 2. 13. 폐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원고 및 F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일방적으로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급기야 피고의 공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6, 18, 22 내지 23, 26,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F가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 F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12. 16.경 수입한 국화에 대한 통관비를 F가 납부하였고 피고는 F가 지정한 거래처에 국화를 출고한 사실, 피고가 2018. 12. 27.경 수입한 국화에 대한 대금 일부를 F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F는 별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역시 F와의 거래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을'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D, 주민등록번호는 원고, 사업자등록번호는 D의 등록번호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역시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점, ③ F가 2018. 12. 16.경 수입된 국화에 대한 통관비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위 국화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후인 2018. 12. 18.경으로 F가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이 수입된 국화를 인도받은 것은 아닌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및 F라고 인식하고 위와 같이 2018. 2. 16.경 수입된 국화를 F에게 인도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⑤ F가 피고가 수입한 국화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 F가 계약에 참여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F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F가 국화 수입 및 계약 체결과정에 참여하였던 이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화를 수입하는 것을 기화로 별도로 국화를 수입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달리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내지 그 계약에 따른 거래 상대방은 F가 아닌 이 사건 계약의 명의인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바,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 및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상품을 인도하고, 인도는 인천 냉동창고에서 하며 이에 따른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2. 16.경 국화 234박스(이하 '제1차 수입 국화'라 한다)를 수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한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령을 거절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국화가 이 사건 계약상 정한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로는 F의 증언이 유일한데, F는 원고 측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F는 피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국화를 국화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관비만 지급하고 가져간 점, 피고는 2018. 12. 11.경 수입할 예정인 위 제1차 수입 국화 사진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국화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국화를 수입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수입한 국화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가 받은 국화의 5%(25개) 이상이 되면 피고에게 동등 수량의 물품을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제1차 수입 국화에 대한 수령을 전부 거절하였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수입한 국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12. 27.경 수입한 국화 250박스(이하 '제2차 수입 국화'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수입이 개시가 될 무렵인 2018. 12. 19.경 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국화가 수입된 2018. 12. 27.경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위 국화를 수령하였지만, 그마저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가(72,000원)보다 낮은 단가(64,500원)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국화를 일부라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단가를 낮춰 별도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2. 19.경 대금을 미리 지급한 점, 피고가 2018. 12. 29.경 제2차 수입 국화 사진을 보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중국 E에서 국화를 수입하기로 되어 있을 뿐 국화를 수입할 수 있는 농장을 특정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농장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2019. 1. 8.경 직접 통관비를 지급한 후 국화 103박스(이하 '제3차 수입 국화'라 한다)를 수입하였음에도 G씨 농장에서

국화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는 2019. 2. 13. 위와 같이 수입한 국화를 폐기하였다.

2) 따라서 제1 내지 3차 각 수입 국화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황지현

판사박승휘